

14.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과정

- 제출자 : 대구광역시교육감
- 회부일자 : 2008년 2월 4일
- 심사
 - 제16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
 -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(2008. 2. 18) 상정 및 의결

2. 주요골자

-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,731명에서 173명 감원된 2,558명으로 하고(안 제2조),
- 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을 2,719명에서 173명 감원된 2,546명으로 함(안 제2조 제2호).
-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3조로 함(안 제1조).

3. 관계법령

-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4조, 제19조
-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 제3조

4. 제안설명요지(설명자 : 기획관리국장 조호식)

-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·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이 고시됨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이 변동되어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.

5. 검토보고요지(보고자 : 전문위원 이재경)

-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표준정원 고시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관련사항을 정비하고,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전부개정으로 조례중 인용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으로,
 - 교육인적자원부의 표준정원 고시(2007-124호, 2007.11.14)에 의거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,731명에서 173명 감원된 2,558명으로(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을 2,719명에서 2,546명으로 173명 감원)하고,
 - 감원된 인력 173명은 식품위생직 공무원의 영양교사 전환 등에 따라 170명이 감원되고(표준정원 증가 6명, 영양교사 전환 △176명), 혁신복지담당관 소속 한시정원이 2007. 6. 30 기간종료 됨에 따라 3명이 감원되는 것으로,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음.

6. 질의·답변요지

- 해당없음

7. 토론요지

-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찬성)